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3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 강선우·김영호·전진숙

김 윤・전용기・진성준

박홍근 • 이기헌 • 서미화

허성무 · 채현일 · 이용선

문대림 · 김한규 · 박주민

정진욱 • 장철민 • 김성환

권칠승 · 문금주 · 이재정

김기표 • 백승아 • 문진석

이재강 · 김영환 · 임광현

의원(27인)

제안이유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시술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치는 수준임. 또한, 타투 시술을 이용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

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 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 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타투행위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구분함(안 제2조).
- 나.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 결격사유,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무면허자에 대한 타투행위를 금지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타투업자 및 타투이스트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위생관리의무, 면허증 게시, 타투행위에 대한 설명, 부작용 신고, 보험 등 가입,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행위 제한 등 타투업자 및 타 투이스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타투이스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인증·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타투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환경 조성과 타투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타투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서화(書畫)타투행위: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의 생김새나 기능과 무관한 그림 또는 글자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국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색소로 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미용타투행위: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바늘 등을 사용하여 국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색소로 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 1) 눈썹, 아이라인, 입술, 흉터, 상처, 튼살 또는 피부 병변부위를 강조하거나 복원

- 2) 두피, 수염, 헤어라인, 구렛나루 부위의 탈모로 인한 빈공간을 채우거나 흉터·상처를 포함하여 원래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복원
- 2. "타투이스트"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타투업자"란 제9조에 따라 타투업소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타투이스트의 업무범위와 한계) ①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타투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타투이스트의 면허 등

- 제4조(타투이스트의 면허 등) ① 타투이스트가 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타투이스트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타투이스트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면허 발급절차, 제2항에 따른 면허 등록과 면허증 발급 절차, 제3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타투이스 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타투이스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5.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타투이스트 자격시험) ① 타투이스트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자격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 ④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 관하

- 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무면허자의 타투행위 금지 등) 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행 위를 하지 못한다.
 - ②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이스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타투이스트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 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9조(타투업소의 개설신고 등) 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타투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②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

- 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타투업소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등) ① 타투업자 및 타투업소에서 타투행위를 하는 타투이스트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타투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설 또는 업무종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자
 - 2. 타투업소에서 타투행위를 하려는 타투이스트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내용·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지정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1조(건강검진) ① 타투업자 및 타투업소에서 타투행위를 하는 타투이스트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항목, 실시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자는 타투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 1. 타투행위를 하는 공간은 타투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공간과 분리할 것
 - 2. 타투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및 약품은 관련 법령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할 것
 - 3. 타투행위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을 한 기구, 소독을 한 기구, 멸 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 4. 타투용 바늘은 멸균된 것을 사용하고, 1명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 5. 타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배출할 것
- 6. 타투행위 전 후에는 손을 세척할 것
- 7. 타투행위 시 멸균된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할 것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타투업소 이 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면허증 게시 등) ① 타투업자는 본인 및 타투업소에서 타투행 위를 하는 타투이스트의 면허증을 타투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타투업자는 타투업소 안의 조명도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밝기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타투이스트는 타투업소 외의 장소에서 타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연대회에서 타투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타투행위에 대한 설명 등) ① 타투업자는 타투의 부작용, 후유 증,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타투업소의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타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타투업소의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타투업소 이용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명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

- 제15조(부작용의 신고) 타투업자는 타투행위의 실시 중 또는 실시 후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투행 위에 사용된 염료, 약품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타투업자는 타투행위에 따른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타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7조(미성년자에 대한 타투행위 제한) 타투이스트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타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① 타투업자가 타투업소를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투업자의 사망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타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타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타투업자가 타투업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타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타투업의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타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타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는 타투이스트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타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 · 감독 등

제20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투업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타투업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영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타투이스트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4.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 5. 제13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타투업소 외의 장소에서 타투행위를 한 경우
 - 6. 타투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타투이스트 업무를 한

경우

- 7.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타투이스트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2조(영업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투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타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10조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1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투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투업소 안의 조명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밝기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타투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2.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타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4. 타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페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타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 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한 이후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타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 제25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타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 상속인에 승계된다.
 - ② 타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제22조부터 제 24조까지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 제26조(위반사실의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타투이스트 및 타투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2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투이스트의 면허취소
-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 제28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타투업 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타투이스트협회) ①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의 업무 개선, 권 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타투이스트협회(이하 "협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2항에 따른 타투이스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투행위를 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투이스트 면허 없이 타투행위를 한 자
 -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 4.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투이스트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
 -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투이스트 면허 없이 타투업소를 개설한 자
 - 6.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타투행위를 한 자
 -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 8.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 ②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신고를 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타투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투이스트 면허 없이 타투이스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의 정지기간 중에 타투행위를 한 자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투의 부작용, 후유증, 사후관리,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투업소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타투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타투이스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